조세, 세관 및 노동에대한 업데이트 뉴스

2016년 6월

본 뉴스중에 우리Grant Thornton Việt Nam 은 고객님에게 조세, 세관, 노동에 대한 정책을 업데이트를 다음 처럼 해드린다:

1. 2016/07/01일 부터 발효된 VAT, 특별소비세, 조세관리법의 변경에 대한 일부내역;
2. 2014년전에 항상 투자활동 내용에 대한 재정부의 안내;
3. 일본의 노년양육 보험;
4. ODA지원자금이 있는 제안의 진행 전문가들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의 확인 절차;
5. 각 기업들은 2016/07/01일부터 노동재해,업종병가의 보험 기금에 노동자의 사회보험 급여 기금중 1%로 납금해준다.
6. No. 107/2016/QH13호의 수입세법은 2016/09/01일부터 발효된다;
7. 2016년 07월 01일전에 서명계약에의한 중고기계,설비수입 및 운송수단에 선적하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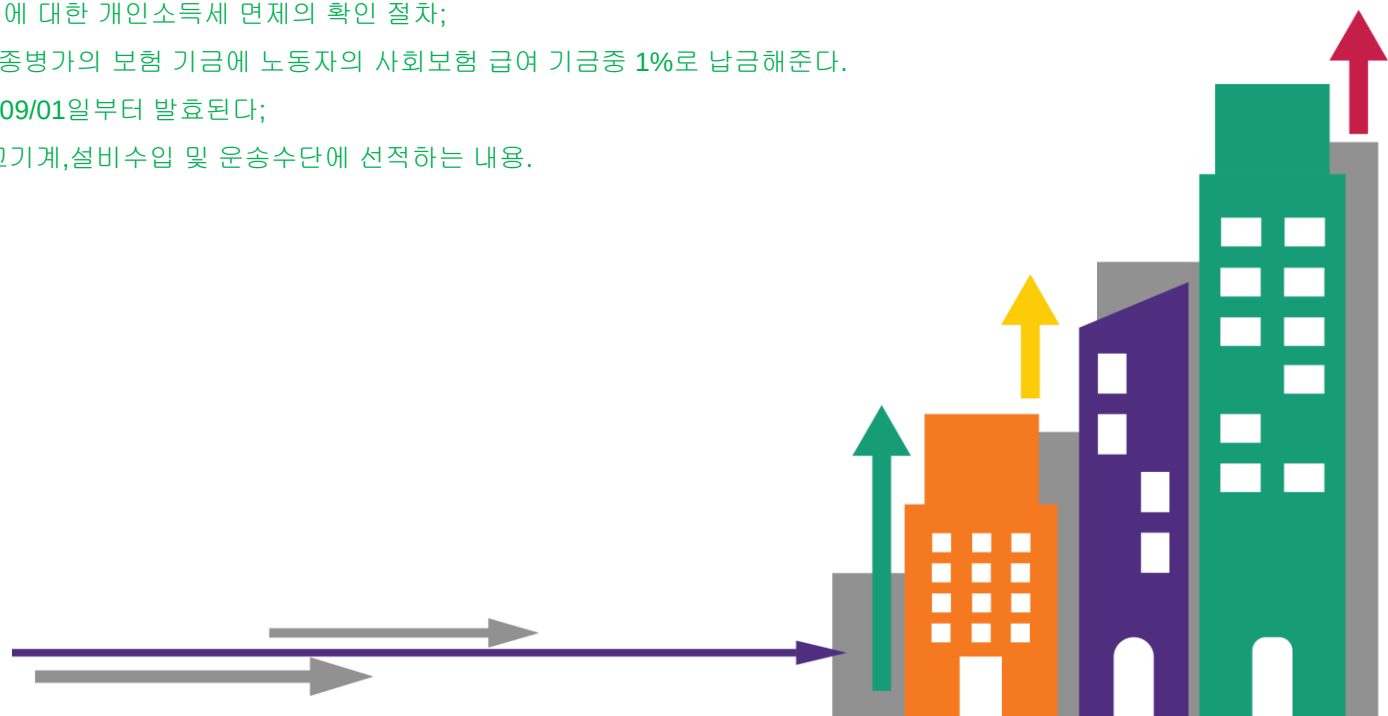

1. 2016/07/01일 부터 발효된 VAT, 특별소비세, 조세관리법의 변경에 대한 일부내역

국회는 No. 107/2016/QH13호의 수입세법을 2016/09/01일부터 발효로 발급해서 다음 일부주목된 내용들이 있다:

VAT 관련:

- VAT부담이 없는대상들에 보충:
  - 노년자,결점자에 대한 돌봐주는 서비스.
  - 자원, 광산으로 가공된 수출상품은 자원,광산 및 파워의 총비용이 상품원가의 51%이상 차지하는 경우.
- VAT환납에 대한 규정의 변경, 보충:
  - 공제방법으로 VAT납세의 기업은 Input의VAT금액이 월중, 분기중에 아직 다 공제되지 못하면 계속 다음기에 공제된다.
  - VAT환납으로 진행하지 않고 법규정의영업조건들이 불충분으로 될때 공제되지못된 잔금을 다음기에 다음경우으로 이전된다:
    - ✓ 기업의 투자제안은 등록된 법정자금의 불입이 부족하고 조건있는 영업하는 사업이 투자법의 영업조건의 부족이나 활동과정중 영업조건유지를 보장되지 않는 경우;
    - ✓ 2016/07/01일부터 허가된 자원, 광산 개발의 투자제안 혹은 자원,광산 및 파워의 총비용이 상품원가의 51%이상 차지하는 상품생산의투자제안인경우.
    - ✓ 수출상품이지만 세관법의규정에 따른 세관활동지역에서 수출되지않는 경우.
  - 세관법규 2년내 계속위반이 없고 조세관리법규정에 대한 큰 리스크대상으로 아닌 납세자인경우에 환세선진행, 후검사조치.

특별소비세

9석이하 승용차 완제품수입에 때한 특별소비세의 변경, 예: 2016/07/01일부터 배기량1.500 cm3 이하의 차들인 경우에40% (현행: 45%);배기량2.500 cm3 이하의차들경우에55% (현행: 50%)등…

조세관리법

매년 5만동이하로 납세된 비농업 땅사용 가족, 개인에 대한 비농업 토지의 면세.
납세자는 일당0,03%기준으로 지연납금을 지연납금전액에 비해 부담한다(현행: 0,05%/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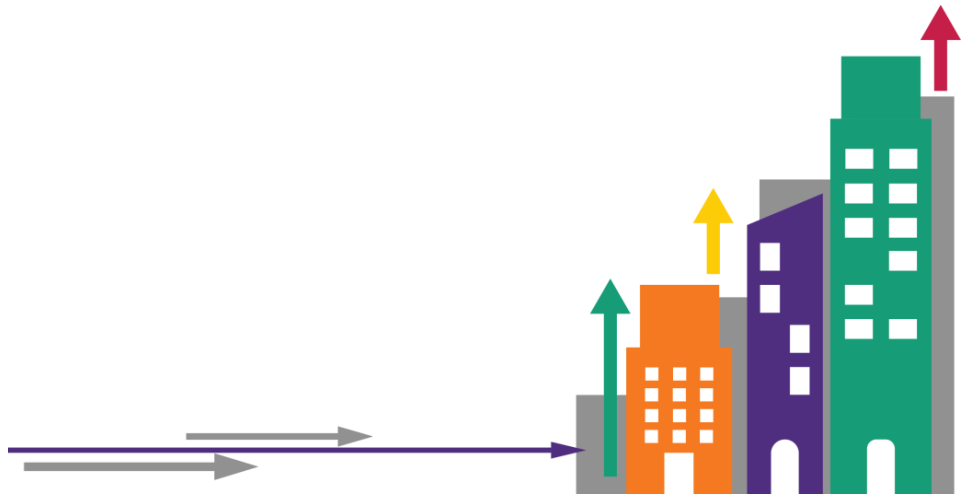

Grant Thornton
An instinct for growth™

2. B재무부는2014년전에 정상 투자활동 내용에 대한 재정부의 안내

베트남주재 EURO 기업협회 (Eurocham)의 의견을 접수하는 바탕으로 정상투자활동내용의 절차에 대한 공개, 명백,간소성을 보장하기위해 재정부는 다음 안내로 한다:

2009 - 2013 년 단계에 늘 투자를 하는 활동하고 있는기업이면 항상 투자활동이 증설투자활동으로 아니고 감안해서 투자제안의적용된 우대 법인세 수혜를 받지못한다.

항상투자활동은 법인소득세수혜를 받고있는제안에 대한 기계,설비 보충투자를 위한 1내지3개의 독립원전으로 진행된 활동이고 다음 포함:

- *기업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기금.*
- *세후 이익금을 재투자로 사용.*
- *유권국가기관과 등록된 투자금범위내 자본금의 사용.*

상기의 원전으로 항상 기계,설비로 보충하는 투자는 법인세수혜를 받고있는 등록 및 승인된제안의 생산영업생산성을 올리지않는 조건을 보장해준다.

다음 주의:

- 제안규모로 명기된 투자허가/투자확인서인 경우에 발급된투자허가에 비해서 증가되면 항상 투자사업은 규정의 항상투자로 볼수 없고 법인세 우대수혜를 받을수 없다.
- 제안규모로 명기되지 않고 혹은 각 기업들이 오직 늘 기계,설비의 교채로 하지만 투자허가서로 발급된투자허가/투자확인서인 경우이 아닌면 상기의 기준을 적용되지 않다.
- 기업은 항상투자활동이 있으면서 발급된투자허가/투자확인서에 비해 생산 캐바를 증가시키면 그 증가에 해당된 초과 수익금에 대한 법인소득세의우대수혜를 적용하지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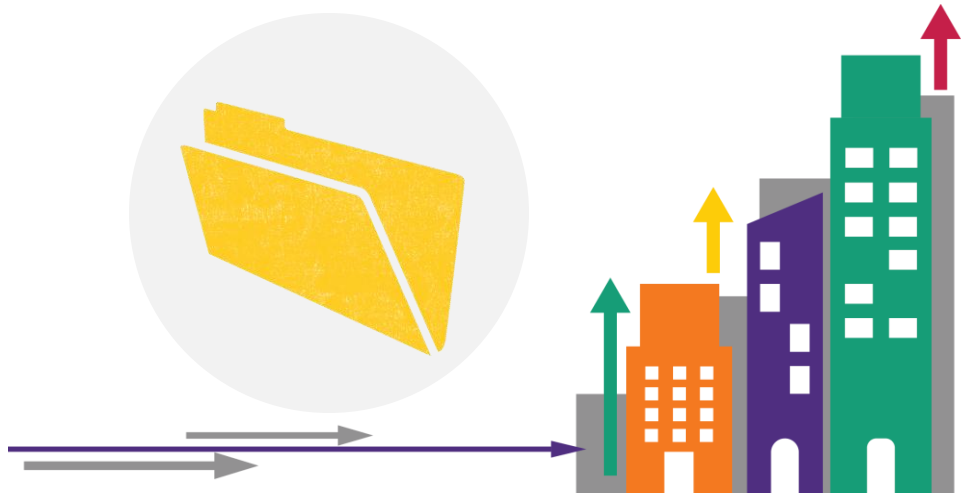

3. 일본의 노년 양육보험

2016/05/27일에 국세청은 법인소득세관련의 안내로 노년양육보험항목이 일본법규의 필수보험항목이라면 그런것을 법인소득세계산 할때 세부담수익으로 공제된다.

4. ODA지원자금이 있는 제안의 진행 전문가들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의 확인 절차

2016/05/27일에 국세청은 안내로서 ODA지원금이 있는 외국공사계약자와 근무계약을 하는 전문 가들인 경우에 외국공사 계약측이 그 전문가에 대한 개인소득세면제 제기의 절차를 책임적으로 진행해준다.
외국공사계약자는 베트남에 본사가 없는 경우에 제안 주임자혹은 제안주인에 대한 위임으로해서 직접관리기관에 전문가들에게 개인소득세를 면제 제기절차를 진행해준다.

5. 각 기업들은 2016/07/01일부터 노동재해,업종병의 보험 기금에 노동자의 사회보험 급여 기금중 1%로 납금해준다.

정부는 의령제No.37/2016/NĐ-CP호 (“의령37”) 를2016/05/15일에 발급해서 노동안전, 위생, 필수 노동재해, 업종병보험법규의 일부조항 집행 안내와 구체규정을 제기해서 그중 에2016 / 07/01일부터2017/12/31일까지효력있는 노동재해,업종병의 보험 기금에 노동자 의 사회보험 급여 기금중 1%로 납금해준다.

노동고용자는 매달에 보험 기금에 노동자의 사회보험 급여기금중 1%로 다음 노동자에게 납금 해준다:

- 간부, 공직원에 대한 법규에 따른 간부, 공직,인원인 경우;
- 기한이 없거나03개월충분의 이상 노동계약자및 01개월충분부터 03개월이하기한의 계약근무자인경우. 단,가정 도우미노동자를 포함치않다;
- 기업관리자, 봉급을 받은 합작사 운영 관리자.
- 그리고 인민군 간부,군인과같은 대상자의 일부 등…

노동재해, 업종병가의 보조금 제도수혜중의사람, 2016/07/01일전에 병완치료및 퇴원의 노동자, 업종 병가자 들은 2014 사회보험법규와 구체규정문서들에 따라 집행한다.
2016/06/30일전부터 사회보험 가입시간은 본 의령의규정에 따른 노동재해, 업종병가의 보험가입 시간으로, 단; 사회보험법규에 따른 정연과 하사금의기금에만 가입대상들을 제외한다.
01 개월부터03 개월까지 노동근무자는2018/01/01일부터 적용된다.

제37 호 의령도 노동재해, 업종병가의 보험, 업종병 진단 비용지원, 노동안전, 위생훈련비용 지원 기준등…의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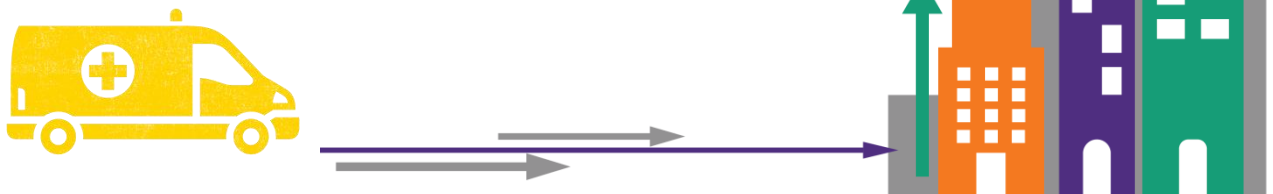

6. 제 107/2016/QH13 호의 수입세법은2016/09/01일 부터 발효한다

Grant Thornton Việt Nam(주)는 제 107/2016/QH13호 법규의 주목된 일부 내용들을 다음 요약해서 고객님들이 참고로 할수 있다: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수입 원부자재, 부품들은 수입 면세로 된다.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수입 원부자재, 부품들이 지만 아직 상품 미수출, 임시수입-재수출상품 이지 만 아직 재수출못한 상품들이 본 법규의 발효날전에 세관과 신고된 리스트에 속하고 아직미납 세 인경우라면 본 법규를 적용된다.
본 법규는 반 덤핑, 반보조, 자위의 조세에 대한 제III장을 내준다. 그중엔 상공부는 반 덤핑, 반보 조, 자위의세금을 규정하고 재정부는 반 덤핑, 반보조, 자위의 세금계산, 수금,환납을 규정하는 기관 이다.
제107/2016/QH13 호의 법규는2016/09/01일부터 발효한다.
제45/2005/QH11호의 수출입 세법은 상기법규의 발효이후부터 무효로 된다.

7. 2016년 07월 01일전에 서명계약에 의한 중고기계,설비수입 및 운송수단에 선적 하는 내용.

2016/06/08일에 세관총국의 세관 감시국은 문서로 내서 중고기계,설비,기술공정Lines 수입통지서 제23/2015/TT-BKHCN호의 통보날전(2016/07/01일)에 서명계약에의한 중고기계,설비수입및 운송 수단에 선적하는기계,설비 상품Lot의 경우가 본 통지의 규정조정에 속하지 않다.

중고기계,설비의 수입에 관련된문제는 고객님들이 우리Grant Thornton Việt Nam(주)의 2016/ 02 / 02일에의 뉴스로 참고하신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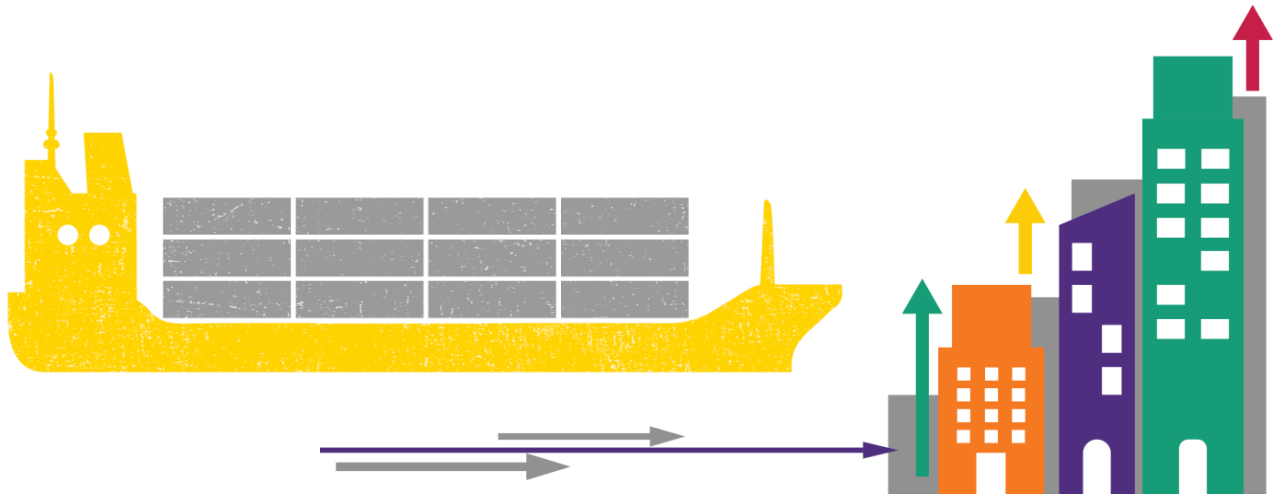

본 소식통의 정보들은 효력 이있는 법규 와 각종 문서부터 요약 하거나 종합한다. 우리 GT Vietnam(주)의 능력과 노력으로 상기의 소식통내용들이 관련된 고객님 들에 유익적 참고목적으로만 생각한다.

(주) Grant Thornton VietNam은 본 소식통 의 잘못점에 대 책임 그리고 이용하는 과정 에 손해 를 입은데 책임지지 않다.

본 소식통에 관련된 정보들을 사용하거나 Grant Thornton VietNam 의 협조를 받으 려면 저희들의 전문가들하고 연락 및 합의 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Hanoi Office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4 3850 1686
F + 84 4 3850 1688

Hoang Khoi
Tax Partner
D +84 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Pham Vinh
한국고객 님 지원자
M. 0913 02 4204
E. 50vinhphamngoc@gmail.com

Kaoru Okat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

Phạm Ngọc Long
Tax Giám đốc Tư vấn Thuế
D +84 4 3850 1684
E Long.Pham@vn.g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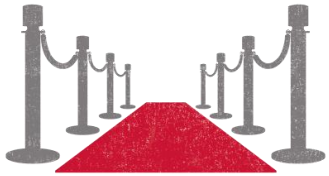

고객님은 우리의 업데이트 소식을 Dawnload 하시려면 다음 Web에 검색해주신것을 바란다.

www.grantthornton.com.vn

Ho Chi Minh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8 3910 9100
F + 84 8 3914 9101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Director
D +84 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an Hong My
Tax Director
D +84 8 3910 9275
E HMy.Tran@vn.gt.com

Tomohiro Noriok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8 3910 9205
E Tomohiro.Norioka@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